

일본 노동성이 규정한 직장내 성희롱

일본 노동성이 직장 안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규정·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.

〈아사히신문〉 19일자 보도에 따르면, 노동성은 지난 18일 발표한 '여성고용관리와 커뮤니케

뉴드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 등을 들었다. 직업생활상의 피해로는 상사의 성적인 요구 거부를 이유로 △해고 또는 승진에 서의 차별 △현저하게 불쾌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예가 포함

서에서 밝혔다.

최근 일본 노동성이 노동자 1백명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9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, 과거 2년 동안 성에 관한 불쾌한 경험을 한 여성은 26%나 되었다. 경험의 내용은 성적 의미가 담긴 질문을 받은 경우 76%, 신체접촉

“농도진한 말·누드포스터도 성희롱”

상사요구 거부해' 근무상 불이익 받을때도 포함

이선 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'에서 “성희롱이란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을 하거나, 성희롱에 대한 대응 여하에 따라 근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 취업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”이라고 정의했다.

보고서는 성적 언동의 예로 신체에의 접촉 등 직접적 행위 이외에 성적인 말을 흘리거나

되었다. 이 보고서는 성희롱은 주로 남자들이 저지르지만 여성이 불러일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.

노동성은 성희롱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까닭에 대해 “성희롱이 여성의 취업의욕을 저하시켜 능력발휘를 막고 있고, 그 개념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쪽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”이라고 보고

73%, 이밖에 근무와 관계 없는 식사 등 교제에의 유혹 및 성관계 유인 등이 들어 있었다.

일본 노동성은 보고서 발표의 후속조처로 각 기업에 성희롱에 대한 기본방침을 설정해 남성사원들의 연수, 성희롱 관련 건의함 설치, 피해여성들을 위한 여성 상담원 배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. **도쿄/김효순 특파원**